

#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161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17. 10. 16.
4. 회부일자 : 2017. 10. 24.

### II 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, 사용·수익허가, 대부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범위와 그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여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며,

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16. 2. 3.)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표현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.

### Ⅲ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등기·등록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통합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함(안 제5조제26호).
-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, 대부 및 변상금징수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통합·정비함(안 제5조제28호).
- 공유재산의 용도변경·용도폐지와 철거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통합·정비함(안 제5조제30호).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·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‘학교환경위생 정화’를‘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’로 개정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표현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(안 제1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).

### 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2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〔조례안 별첨2 참고〕

3. 기 타 :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[조례안 별첨1 참고]
- 입법예고(2017.9.1. ~ 9.21) 결과 : 의견 없음.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-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.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61호로 제출되어 2017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, 사용·수익허가, 대부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범위와 그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여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의 총 5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,

우선 개정대상 전체 조문에 걸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띄어쓰기와 순화표현 등의 사항을 반영하였고,

안 제5조제16호에서는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17.2.4.] [법률 제13937호, 2016.2.3., 제정] 시행에 따라 기존의 ‘학교환경위생정화’를 ‘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’로 개정하였습니다.

특히 안 제5조제26호와 제28호부터 제30-2호까지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조 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교육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의 대상과 범위를 명료하게 규정하였습니다.<sup>1)</sup>

---

1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공유재산"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, 기부채납(寄附採納)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2. "물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(動産)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.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,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등기·등록, 사용·수익허가, 대부 및 변상금징수 그리고 용도변경·용도폐지와 철거 등에 관한 위임 사무를 단순히 통합·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**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---

가. 현금

나. 유가증권

다.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

3. "기부채납"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
4. "관리"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·운용과 유지·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
5. "해당 지방자치단체"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
6. "처분"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, 교환, 양여(讓與), 신탁,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

7. "사용·수익허가"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.

8. "대부계약"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.

# 관계법령

##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·출장소 또는 읍·면·동(특별시·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·출장소 또는 읍·면·동의 장을 지휘·감독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.

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,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(교육장의 분장 사무) 교육장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.

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2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

#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공유재산"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, 기부채납(寄附採納)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
2. "물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(動産)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.

가. 현금

나. 유가증권

다.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

3. "기부채납"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

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
4. "관리"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·운용과 유지·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5. "해당 지방자치단체"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6. "처분"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, 교환, 양여(讓與), 신탁,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
7. "사용·수익허가"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.
8. "대부계약"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.